# 점자블록

## 규격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 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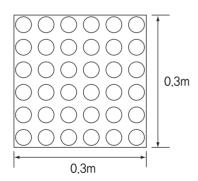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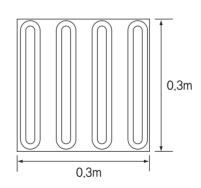




####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 16 - 가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 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터 미터로 하여야 한다.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내시설에서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주출입구 접근로에 유도형 선형블록과 경고형 점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점자블록의 표준형 크기를 0.3×0.3m로 하는 것은 약시인들과 같이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점자블록을 표준형 크기로 설치하지 않고 점형블록의 볼이나 선형블록의 선만 으로 설치하게 되면 약시인들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크기의 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외각국의 점자블록 설치 사례(국내 편의즁진법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음)」



# ☑ 점자블록

## 색상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바닥재와 구별하기 쉬운 황색 사용



바닥재와 구별하기 쉬운 황색 사용



####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 16 - 가

10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 ■ 알아두면 편리한 Tip

• 노란색은 인지도가 강한 색상으로 약시자의 유도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노 란색 블럭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나 바닥색상이 노란색과 구별이 되 지 않을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바닥색상과 구별되는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점자블록

## 설치방법

점형블록은 시각 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한다.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한다.















####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 16 - 나

-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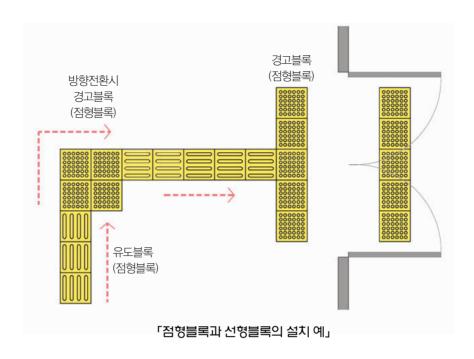
#### ■ 알아두면 편리한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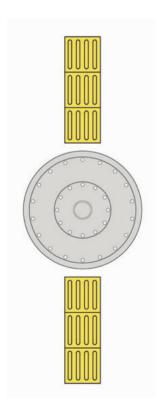
• 건축물 내부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앞, 계단의 단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에 계단의 폭만큼,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측벽 앞에, 주출입문 앞뒤의 0.3m전면 에 점자블록 중 점형블록만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내부에는 유도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내부가 넓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안내데스크까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내데스크까지만 선형블록으로 유도하고 안내데스크 앞에서 점형블록으로 경고한다.

또한 내부의 이동공간이 넓고 복잡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유도 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손잡이를 벽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성 안내를 함께 설치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 •특히 화장실 입구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화장실 입구를 모두 막아 휠체어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불편해거나 위험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 옆에 설치된 측벽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블록이 설치된 곳의 벽측에 바닥으로부터 1.5m높이에 점자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 주출입문에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문이 닫혀있을 때 시각장 애인이 문의 위치를 인지하거나 문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므로 문의 종류와 무관하게 문 중심선 전후 0.3m 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다만, 자동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센서가 작동되는 위치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내부 보행공간에 기둥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 주변에 점자블록 또는 다른 재질의 바닥재를 설치하면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유도블럭의 진행방향에 맨홀뚜껑이 있는 경우 뚜껑부분의 블록은 생략하여 설치하나(왼쪽 그림) 가능하다면 일본의 사례(오른쪽 그림)와 같이 트렌치 위에도 선형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유도 및 안내설비

## 음성 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 17 - 나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알아두면 편리한 Tip

- 주출입구의 부근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음성안내장 치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성안내장치는 점자안내판, 촉지도에 부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음성안내장치에 호출버튼을 설치하여 관리자와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 해 외 사 려



「음성안내장치」

# 2 유도 및 안내설비

##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 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0m~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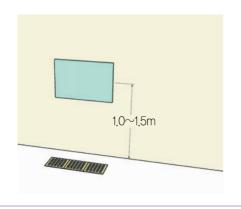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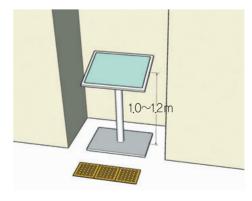


####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 17 - 가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 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에는 음성 안내장치를 부가 설치하여 충분한 안내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인적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지안내, 건축물안내, 층별안내, 화장실 또는 승강기 위치안내 등 필요에 따라 곳곳에 안내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보다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보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므로 설명형 정보제공 보다는 간략하게된 거리표시방법 등을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시설이나 방 또는 화장실을 안내하는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가 부착된 벽의 바닥에는 벽면으로부터 0.3m를 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촉지도식 안내판 제작시 시각장애인들이 촉지가 가능하도록 점자는 반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함(부식형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 2 유도 및 안내설비

##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 · 시각 ·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 17 - 다

•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유도 신호장치는 전맹인과 약시인을 위해 청각과 시각을 통한 유도가 가능해야 한다
- 청각 유도장치에서는 안내멘트 음향과 음색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건축물 곳곳에 센서(전자식 신호장 치)를 설치하여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마치 박물관에서 작품 앞 에 서면 음성을 통해 작품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시설 내부의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의 설치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시각적 인지도가 높으며 연속적인 안내표지 설치」



# 3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장애인

비상시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청각장애인

비상시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 – 18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은 비상상황시 소리에 의존하여 대피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비상벨 (청각경보시스템)을 출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소리가 여러곳에서 함께 날 경우 방향 찾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비상시 음성으로 안내해 줄수 있도록 음성안내를 비상구에 함께 설치하는것도 매우 바람직한 경보 피난설비이다.
- 청각장애인은 비상시 시각에 의존하여 상황을 파악하여 대피하여야 하므로 경 광등(시각경보시스템)을 출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시 작동되는 문자안내판이 경광등과 함께 설치된다면 보다 안전한 비상대 피가 가능하다.



# Section 05 기타시설

- 1. 객실 및 침실
- 2. 관람석 및 열람석
- 3. 접수대 및 작업대
- 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 5. 피난구 설치
- 6. 임산부 휴게시설
- 7. 기타 설비